
북한 지적소유권 법제의 북한 헌법상 근거 등에 관한 소고

이규홍*

- I. 서론
 - 1. ‘북한’ 지적소유권법제 등에 관련한 ‘북한 헌법’ 논의 필요성
 - 2. 논의의 전개
- II. 북한 지적소유권 법제와 과학기술법제의 북한 헌법상 근거
 - 1. 논의의 전제
 - 2. 북한 헌법의 이해
 - 3. 북한 지적소유권의 헌법적 형성 및 제한 근거
- III. 북한 헌법에 비추어 본 지적소유권 법제의 특징
 - 1. 지적소유권법의 목적 및 지도통제
 - 2. 발명법
 - 3. 다른 지적소유권법
- IV. 결 론

* 특허법원 부장판사, 법학박사.

초 록

디지털 시대에, 과학기술 선진국들에게 둘러싸인 시공간 속의 남북한이 민족 생존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 체제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 지적소유권법 체제 및 그 뒷배가 되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이해는 이미 단기과제이다.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비록 목적과 내용이 형식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그 배경이 되는 사상은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발전 도구라는 최소한의 인식만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다. 이는 일반재산권 제도와 헌법의 체계적 지위의 차이점에 주로 기인하므로 북한의 지적소유권은 북한 체제 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북한 지적소유권 및 관련 과학기술 영역의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는데, 특히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헌법에서 지적소유권이 어떤 형식으로 헌법에 도입되었는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구체적인 북한 지적소유권 관련 개별법의 특징을 북한 헌법에 비추어 고찰하여야 할 것인데 관련선행연구 중 드러난 대표적인 차이점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 지적소유권법은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고, 국가의 개입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념에 근거한 우리 지식재산권법과는 차이점이 뚜렷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이 아닌 북한 헌법질서의 시각에서 북한 지적소유권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미래 세대들의 북한제도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식재산권, 헌법, 과학기술, 통일, 소유권, 발명법, 상표법, 저작권법, 북한

I. 서론

1. ‘북한’ 지식소유권¹⁾법제 등에 관련한 ‘북한 헌법’ 논의 필요성

21세기는 정보와 첨단지식에 기반을 둔 지식기반경제의 시대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본격화된 디지털 시대에, 또 지정학적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과학기술 선진국들에게 둘러싸인 시공간의 한복판에 있는 남북한은 한반도에서 민족 생존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공유하게 되었고, 그 대책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상호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현재 경제 수준 및 과학발전 수준은 전반적으로는 낮은 단계이지만,²⁾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과학기술정책 강화, 미국의 최근 중국에 대한

1) 이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으로, ‘대한민국’은 ‘남한’ 혹은 ‘우리’(예컨대 우리 헌법)로 표기한다. 북한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를 ‘지식소유권’으로 번역한다(『북한 민사법 사전』,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으로 구별한다). 남한에서의 번역어의 적절성 및 그 함의에 관하여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이후 모든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용어의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지식소유권’이라 하면 북한의 제도를, ‘지식재산권’이라 하면 우리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별하여 약칭하여 사용한다. 용어의 문제점은 이규홍·정필운, “헌법 제22조 제2항 관련 개헌론에 관한 소고—지식재산권조항의 재정립에 관하여”, 『법조』, 통권 제650호(2010), 63면 이하, 윤권순, 『지식재산권법이란 무엇인가』, 화산미디어, 2019, 16면 참조.

2) “현 단계에서 남북의 경제력은 비교 불가한 수준이다. 2018. 4. 29. 한국은행이 국내 정보기관의 자료를 통해 추산한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2016년 기준 36조 4,000억 원 수준이다. 남한의 당시 명목 GNI는 1,639조 1,000억 원이었다. 남한 경제규모가 북한의 45배란 의미이다…남한의 수출액은 4,954억 3,000만 달러로 북한(28억 2,000만 달러)보다 175.7배 많다. 북한이 남한에 앞선 분야도 있다. 철광석·석탄 생산량 쪽이다. 북한의 철광석 생산량은 2016년 기준 524만 9,000t으로 남한보다 10배 많다. 석탄도 북한이 3,106만t 생산해 남한 176만t보다 월등하다. 다만 자원소비 패턴이 다를 뿐이다. 한국의 원유 도입량은 10억 7,812만 배럴로 북한 390만 배럴과 276.4배 차이가 난다.” (우성규, 「남북 경제력 차이, 명목 GNI 45배·수출 176배… 비교 안 돼」, 국민일

지식재산 보호강화 압박의 여파,³⁾ 후술할 북한의 건국 이래의 입법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북한 당국의 지적재산에 대한 관심은 향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지적소유권법제도 자체의 수준은 물론, 특히 실무적인 특허권 등의 창출(등록)과 추후 보호현황(소송) 등 운영에 있어서 북한 ‘헌법적 규범’⁴⁾ 등에서 드러나는 목표수준과 대외 홍보 수준에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적으로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우선 북한은 경제수준 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글로벌 경제체제에 편입하려 할 것인데, 예컨대 개성공단 같은 제조산업거점으로서의 역할 증대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그간 감추어진 남한을 포함한 외국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이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고, 이는 나아가 장기과제인 지식재산권 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통일비용의 부담 문제로까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자산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 체제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 지적소유권법 체제 및 그 뒷배가 되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이해는 이미 단기적 과제로 분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⁵⁾

보, 2018. 4. 30자); 하지만 북한은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 경제성장을 유지하였고, 약 7,000조 원 가치의 광물(특히 희토류)과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세는 성장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특구를 지정해 적극적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점에서 저성장, 저소비, 저출산, 고령화로 접어드는 한국경제의 유일한 탈출구라는 지적도 있다. 최성우, “남북한 상표권 보호의 현황과 상표제도 공동 발전방안”, 2018. 11. 27. 국회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 토론회 자료집, 27면.

3) The Epoch Times 2019. 11. 2.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017년부터 미중 무역협상을 시작하였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중국은 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심각하게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헌법적 규범’은 후술하는 북한 헌법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용어로, ‘헌법’과 혼용한다.

5) 남북한은 1990. 9. UN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소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는데(1992. 2. 19. 발효), 그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2조 제2항은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였고, 2000. 6. 15. 남북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합의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투자자산’에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가 속한다(제1조 다호)고 하면서,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제2조 제2호)고 규정하여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를 한 바

이런 시각에서 북한의 지식소유권법 체제 및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방안⁶⁾이 가능하지만, 본고에서는 ‘북한 헌법에 기초하여 북한 지식소유권을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⁷⁾ 남북통일은 임계점을 넘기 전까지는 경제·사회·문화적 통합⁸⁾이라는 상태에 한걸음씩 접근하는 정치·적 대장정일 것이고, 동서고금에 유래 없을 이 지난한 여로에 ‘정치현실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가치의 세계를 규범화함으로써 정치현실의 안정화 내지 합리화를 촉진’시키는 기능⁹⁾을 가진 헌법적 규범이란 길라잡이의 선도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 모두 ‘헌법’이라는 명칭의 성문규범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일과정에서는 각 ‘헌법 해석의 범위’가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식재산권 통합론의 시발점 역시 헌법적 관련규범의 의미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헌법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석은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정치적인 이유에서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지식재산권 보호는 거의 진척이 없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북한 내 자유로운 상품·서비스 거래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이유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시급하게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2018. 4. 27., 5. 26., 9. 18.까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018. 6. 12.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남북 교류·협력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자연스럽게 남북 경제 교류의 활성화를 대비하여 지식재산권, 특히 상표권의 사전 확보 내지 제3자의 선점 방지를 위한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최성우, 앞의 발표문, 32면.

- 6) 남북한 지식재산권 연구에 관하여는 대체로, ①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 각각에 대한 연구방안, ② 남북한의 지식재산권법이 각기 상대방 창작물 보호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는 방안, ③ 교류와 협력의 증진 방안, ④ 통일 이후 법제도 통합 연구방안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 7) 본고에서는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헌법과 지식소유권법제의 관계를 주로 논의하므로 모든 범위에서 공통되는 법적 쟁점인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북한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까지 미친다고 보는 입장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존재하는 선행연구(판례 포함)에 미룬다. 또한 거시적으로 남북한 지식재산권법의 교류 내지 향후 통합방안이라는 주제 역시 매우 중요하고, 특히 전자(교류)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개연성도 있어 시급한 논의일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 8) 독일의 경우 1960년대 후반부터 동방정책(Ostpolitik)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형태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 10. 3. 통일된 후에 발생한 후유증은 예상을 넘는 것이었다고 하며, 독일 통일 후 5년 동안 5,000여 개의 법률이 제정된 것에서 사후적 작업의 방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윤철홍, “통일 후 북한의 소유제도 재편 방향”, 『승실대 법학논총』, 제44집(2019. 5), 55면.
- 9)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제6판, 박영사, 2013, 33면.

논의단계¹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북한의 헌법적 규범에 의한 지적소유권에 대한 규범적 통제 논의는 남북한 모두 부족한 상태로 보이고, 관련하여 북한 지적소유권 제도의 버팀목으로 볼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본고에서 양자의 개관을 시도하여 본다.¹¹⁾

10) 지적재산권법 학자들은 개별분야의 여러 제도에 관한 입법론이나 해석론에 집중한 나머지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문제의식은 아직 희박한 형편이라고 한다. 박성호, “지적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법학논총』, 제24집 제1호(2007), 96면; 이규홍, “지적재산권법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70-3호, 2019, 177면 이하가 그중 하나로 지적재산권의 현대적 의미 및 확장 경향, 그럼에도 간헐적 헌법적 주요 논의의 대상에서 상당 부분 소외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사회권적 측면의 부상, 인권적 접근 등의 중요성 강화 등 현대 사회의 지적재산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본권으로 설정하려는 논의 등을 설명하고 있다; 다른 법분야 역시 각 내부 논의가 상당히 높게 축적되어 있고, 헌법 분야 역시 특히 헌법재판소의 설립 이후 많은 심층연구가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나, “헌법과 각 개별법”의 연계성을 추구하는 연구는 각 법분야의 내적 한계 등 이유로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북한법 연구의 경우 역시 그런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본고가 부족하나마 특히 북한 헌법에서 바라보는 북한법률에 대한 파악의 한 예로 기능하였으면 한다. 특히 지적재산권제도는 일 국가의 소유권 제도의 큰 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통치철학과 맞닿아 있고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도차원이 아닌 거시적인 체제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음 [홍봉규,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 고찰”, 『통일문제연구』, 2013년 상반기/통권 제59호(2013), 267면]을 고려할 때 향후 논의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11) 요컨대, ‘북한 지적소유권법제’가 갖는 의미를 ‘북한 헌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작업은 그간 이루어진 많은 북한 지적소유권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북한 지적소유권법 조항을 해석론적으로 분석한다든가 남한의 대응 법과 비교하는 작업은 북한이 현재 지적소유권법의 세계적 추세에 따르지 못해 개정작업이 더디게 이루어져 아직 낮은 수준의 법체계에 머물고 있는 점, 지적소유권법 적용 예가 아주 적어 보이고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논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작업은 북한의 지적소유권법 체계가 어떠한 사회적 기반 위에 축조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축적되어야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의 최첨단’을 달리는 지적재산권이 북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향후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나아가 남북한 지적재산권 상호교류 내지는 통합론과 향후 필연적으로 수반될 입법론에서 그 제도적 기반인 남북한의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다져 놓지 않으면 불측의 난관에 봉착할 우려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작업의 전제인 북한의 지적소유권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는 난해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 원문의 1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초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도 없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거나(최은석·허인, 『북한 지적재산제도의 이해』, 한국지식재

2. 논의의 전개

남북한 간의 지식재산권 관련 각 헌법 조문과 지식재산권법 규정들에서 볼 수 있는 유사성,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도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을 매우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채택한 점[북한 헌법에는 우리 헌법의 소위 과학기술조항(제127조)에 해당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하고, 지적소유권 조항과 더불어 경제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연계시키고 있다]에서 본다면, 남북한의 다른 법역과 달리 지식재산권 법역과 과학기술 법역에서는 상호교류나 통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¹²⁾ 반면 북한은 무엇보다 소유권으로 대표되는 일반재산권 제도가 남한과 매우 상이하다는 점, 북한 헌법의 체계적 지위가 우리 헌법과는 사뭇 다른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낙관론을 택하기에는 장애물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첫째, 북한 지적소유권 및 그에 관련하여 과학기술 영역의 헌법적 규범에 의한 (형성 및 제한) 근거(II)를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특히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헌법에서 지적소유권이 어떤 형식으로 헌법에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법제와는 분리하여 구체적인 북한 지적소유권 관련 개별법의 특징을 북한 헌법에 비추어 고찰(III)하여야 할 것인데 북한 지적소유권법제가 우리 지식재산권법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아닌, 북한 헌법과 연계하여 관련

산연구원, 2014, 13면), 특허제도를 포함한 공업소유권에 관한 북한측 논문이 있지만 수준이 높지 않고 소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으로 진단한다(홍봉규, 앞의 논문, 259면).

- 12) 구체적이고 진전된 협력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협력 결과라고 할 만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며 2006. 3.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통일부로부터 ‘북측 저작권 대리·중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위 재단이 창구가 되어 다수의 저작권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위 재단과의 관계는 협력 모델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대리·중개업자로서의 제한적인 역할로 인하여 지속적인 협력 관계로 정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최경수,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6면, 110면; 북측에 북한저작권 사용계약에 따른 저작권료를 전달하여 왔으나 2008. 10. 이후 전달한 명세서는 없다고 한다.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개정정보판, 한울 아카데미, 2019, 325면.

선행연구를 전제로 한 몇몇 차이점¹³⁾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북한 헌법질서의 시각에서 북한 지식소유권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근본적 접근시도는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갈등, 즉 절대적 강화 주장(주로 선진국 및 지식재산권 전문실무가)과 이에 대한 우려(반론, 주로 개발도상국 및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역연구자)의 대립이라는 전제하에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 사회의 특이성까지 고려할 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쉽지 않은 것이지만, 향후 북한의 관련 법개정의 방향성과 한계성을 조금이라도 더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 통일을 바라보는 미래 세대들에게 북한제도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북한 지식소유권 법제와 과학기술법제의 북한 헌법상 근거

1. 논의의 전제

(1) 우리 헌법과 재산권

재산권은 보호대상이 법질서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대표적인 기본권으로, 법질서의 매개가 없다면 재산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만이 존재할 뿐이다.¹⁴⁾ 그런데 지식재산권은 뒤에서 보듯이 ‘사실적인 지배’의 개념이 일반 유체물인 재산권과 상이한, ‘자유로운 공적 정보 유통에 대한 개인에 의한 통제권’이라는 의미의 지배(유형적 점유를 배제)를 의미할 뿐이다. 지식재산권 제

13) 북한의 각 개별법(부문법)에 관한 전반적인 조문해설 및 우리 법과의 비교는 한명섭, 앞의 책, 257면 이하; 박종배,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 북코리아, 2011, 140면 이하; 최은석·허인, 앞의 책, 42면 이하 참조.

14) 한수웅, 『헌법학』, 제8판, 법문사, 2018, 854면(입법자가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직접 헌법상의 재산권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저작권이나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도는 헌법적 정보질서 운용이라는 큰 틀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현대적 의미의 기능(순작용)과 한계(부작용)라는 양면에서 명확히 추출한 후 그 존재근거와 한계설정 근거를 헌법에서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재산권보장에 관한 일반규정은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와 재산권의 사회기속성(헌법적 한계)을 명시하는 규범구조를 통하여 재산권보장의 한계를 밝히면서도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재산권보장적 법률유보와 재산권행사절차적 법률유보를 함께 마련하는 상반구조적 규범구조를 택하고 있고, 이러한 재산권보장규정은 이중적 의미(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과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¹⁵⁾ 과거 사회주의 국가가 특허권을 사유재산이라고 보아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¹⁶⁾처럼 대개 사유재산권제도는 자본주의의 제도적 보장이라고 하므로 그 제도존속이 재산권 제한의 한계로 지적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사유재산권제도를 보장하므로 당연히 지식재산권제도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재산권¹⁷⁾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

15)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14판, 박영사, 2018, 527, 528면(이러한 보장으로 사유재산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률제도가 허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의 사적 유용성과 임의처분권을 완전히 부인하는 법률제도도 위헌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수웅, 앞의 책, 869면은 “저작권법이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득재산권에 대하여도 50년에서 25년으로 축소하는 경우, 이와 같은 개정은 저작권의 내용을 장래에 있어서 새롭게 형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저작권자에게 귀속된 구체적 권리(50년 동안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고 한다.

16) 예컨대, 구 소련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사적 개인의 독점에 근거한 이윤추구를 배척하여 특허권의 독점적인 실시권한이 개인에게 허락되기 어려웠다. 결국 ‘발명자증서’가 발명자 보호의 유일한 수단이 되어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보상이 제한되었고 정작 특허권으로부터 오는 실시의 권능은 인정되지 않았다. 구 소련에서 발명자증제도는 1981년에 폐지되고 특허권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홍봉규, 앞의 논문, 262면(발명자증제도는 우리가 실시 중인 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와 유사하다고 한다. 소련 및 중국의 제도연혁은 위 논문 260면 이하 참조); 보호범위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북한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가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7) 현대사회에서는 ‘인권(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 문제도 중요한 주제로 논의된다. UN 총회에서 1948. 12. 10.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중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조항은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항)가 있다. 그리고 세계인

그리고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한 입법권능의 한계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에 해당될 것인데, 여기서 보상이 필요 없는 사회적 기속성이라는 헌법적 한계론(재산권보장의 한계)과 보상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제한의 문제가 바로 등장한다. 특히 지적재산은 일반적인 재산과 비교하여 특유의 강한 사회적 기속성을 가지므로 위의 문제는 일반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다른 측면이 있다.¹⁸⁾

권선언을 바탕으로 각 당사국에 마련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인권협약 중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역시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제1항)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과 지식재산권 두 영역의 상관성에 관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우선, 두 영역 모두 각자 그 자체의 중요한 쟁점에 사로잡혀 상대방 영향력의 자기 영역으로 확장가능성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으로 인권법 영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등에 의한 인권침해 감시 등에 치중하였고, 지식재산권 분야도 그 보호범위 확대 및 무역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토착주민과 전통지식 보호논의(제3자에 의한 전통지식 사유화)가 시작된 것과 WTO/TRIPS 협정 체제의 출범을 두가지 계기로 하여 양자간의 관계가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자체에 본래 인권적 측면이 깊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자는 본질적으로 연관된 것인데 디지털 시대가 완숙기에 접어드는 현대사회(예컨대 대중화된 스마트폰의 사용은 자유권적·사회적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다)는 전대미문의 기술 발전과 이에 수반한 지식재산권의 강화가 두드러져 양자의 긴장관계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육소영, “지적재산권과 인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2017), 840면; 북한에서의 지적소유권 보장도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 18) 예컨대 의약 관련 특허권의 높은 공공성이라든지, 상표권과 표현의 자유와의 관련성, 사회적 맥락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저작권 제한조항의 보상규정 준부 등이 그것이다. 이규홍, 앞의 논문, 215면 이하 참조;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115 등 결정에서 저작재산권과 관련하여 “재산권 제한이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수용을 정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된 재산권 하나하나에 대한 제한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산권 제한의 효과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제한의 성격을 이해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규율형식의 측면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의 특정한 재산권을 개별·구체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려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추상적으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에 관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장래에 있어서 일반·추상적인 형식으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확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북한 지적소유권 관련 특이점

북한의 개별 지적소유권법의 제정연도¹⁹⁾를 개략적으로 보면, 공업소유권은 1967년 제정된 ‘발명 및 창의고안²⁰⁾에 관한 규정’과 1968년 제정된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으로 이분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1998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지적소유권 보호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였고, 같은 해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이 ‘발명법’으로,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을 ‘상표법’과 ‘공업도안법’으로 분리·제정하였으며, 2001년 저작권법, 2003년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과 원산지명법을 각 제정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북한의 관련법들은, 후술하듯이 남북한이 모두 각 헌법에 명시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보호규정을 둔 특이한 입헌례를 취한 점, 개별 지식재산권법 역시 가입한 각 조약 등의 영향으로 적어도 존재하는 조항은 유사한 내용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북한의 지적소유권 관련 논의에는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첫째, 북한 헌법의 규범력과 법체계적 위치의 특이성이 있다. 북한 헌법은 법체계상 ‘교시’의 하위에 위치하는 등 우리 헌법 등 일반적인 현대 입헌주의 국가의 성문헌법과는 상이한 점이 적지 않아 그 이해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일단 북한 ‘헌법’은 광의의 ‘헌법적 규범’ 전체를 통칭하는 것임을 전제로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북한의 소유권법제 자체의 특이성이 있다. 북한은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에 모두 비교적 일찍 가입²¹⁾하는 등

19) 북한 지적재산권법으로 남한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발명법, 상표법, 공업도안법, 저작권법 이외에도, 원산지명법과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을 더하여 총 6가지 법률이 있다. 원산지명법은 특정 특산물에 대한 원산지명을 등록하여 원산지명권으로 보호하는 제도로서, 남한은 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이 규정하는 원산지표시소인행위로서 보호하고 있다. 북한은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을 통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권처럼 저작권으로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다.

20) 창의고안자는 우리의 실용신안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이주환, “북한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연구—북한에도 특허청이 있을까?”, 연세법학회 제64회 학술대회 발표문(2019.1.26.), 65면.

21) 북한의 WIPO 가입은 남한(1979년)에 비해 5년, PCT 가입이 남한(1984년)에 비해 4년

형식적·외부적으로는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막상 그 실질을 보면 개별 지적소유권법의 내용이 상당히 취약²²⁾하고 특히 실질적 적용 여부 및 규범력이 배일에 싸여 있다는 점에서, 추론을 통한 연구가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 헌법과 지적소유권법의 관련성 문제도 있다. 이는 현대 국가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앞서 본 북한 헌법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데 지적소유권 법제가 북한 헌법 제74조를 기반으로 짜임새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작 소유권제도 등 다른 중요한 헌법 규정들과의 규범조화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결국 지적소유권이 확고한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요구되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2. 북한 헌법의 이해

(1) 북한 헌법의 체계상 지위와 수정보충²³⁾

구체적으로 북한의 통치구조의 운영원칙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원칙’, ‘인민민주주의 원칙’, ‘당의 영도의 원칙’ 및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원칙’으로 설명되는데 앞의 세 가지 원칙이 공산주의 국가의 공통적 통치구조의 운영원칙이라면, 마지막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원칙’은 북한 특유의 원칙으로 북한의 법체계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석 지침이 된다. 이는 수령이 국

먼저 이루어졌고, 파리협약에 1980. 6. 10. 가입하여 한국이 같은 해 5. 4. 가입한 것과 거의 동시인 점 등 적극적으로 국제조약에 가입해 왔다. 현재 WIPO, 파리협약, PCT, 마드리드, 헤이그 등 ‘TRIPS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그 외의 상세는 박종배, 앞의 책, 23면.

22) 북한 지적소유권법은, 비록 개정의 빈도나 조문의 수가 법의 가치측정기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관련 법령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등 상당히 부족하여 우리와 단순평면적 법령비교 자체는 의미 없어 보인다고 한다. 홍봉규, 앞의 논문, 259면(중국과 러시아연방의 발명특허제도의 일부를 간접적 접근방법으로 추론함으로써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에 관하여 심도 있는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23) 북한 헌법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살펴본다. ‘수정보충’은 법개정의 북한식 공식 표현이다.

가수반으로서 국가기관의 권한, 활동, 사업 등에 대해 종국적 최종적 영도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1967년 체계화되고 1974년 반포되어 북한에서 헌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²⁴⁾되는, 이른바 ‘10대 원칙’(2013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명칭변경)을 계기로 공식화되었다.²⁵⁾ 이러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원칙’과 ‘주체사상’은 헌법 및 부문법²⁶⁾에 대한 입법과정에 반영되고 있고 북한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영도하에 사회주의법치국가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당의 영도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행위규범으로 표현된 사회주의법을 기본수단으로 하여 사회관리, 국가관리를 해나가는 국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⁷⁾

그러므로 북한의 헌법이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는 공식적인 설명이 있음에도, 또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헌법이 그렇듯 성문헌법의 명시적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에서 그것을 제약하고 지도하는 이념과 원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²⁸⁾는 점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²⁹⁾ 그

24) 북한 출신 전문가들에 따르면 헌법보다 당의 지시, 당 규약, 유일사상 10대 원칙, 김일성 가계의 명령, 지시가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김홍광,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과정에서의 북한 법제 개편전망”,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2011, 175-179면). 국무위원장의 지위는 사실상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흔히 일각에서는 북한이 헌법에서 규정한 공식적 규범체계와 다르게 내부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나, 이는 공산주의 이념 및 북한의 내부 체제이념을 간과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법제정법은 이러한 북한의 체제이념을 반영하여 국무위원장의 명령 등을 제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송인호·최귀일, “북한의 법제에 대한 고찰—북한의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2019),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39면.

25) 10대 원칙 전문은 장명봉 편, 2018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1,703면.

26) 우리의 개별법률을 일컫는 북한의 용어이다. 그 아래 규정과 세칙이 있다. 헌법은 전체법이라고도 한다. 상세는 한명섭, 앞의 책, 100면.

27) 이상은 송인호·최귀일, 앞의 논문, 231면.

28) 북한 헌법의 체제상 헌법재판의 권한을 모든 재판소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재판소제도는 1인 독재체제를 완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도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정병화 외 2인,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인권 실효성에

러나 북한에서는 최고위층의 말씀이나 교시에 의하여 언제나 헌법과 법령이 무시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헌법 등이 장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그런 점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하나의 특징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³⁰⁾

북한 김정일 정권은 1998. 9. 5. 시장경제질서적 요소의 도입, 즉 사적 소유 확대, 특수경제지대 설치 및 지적소유권법 정비를 위하여 헌법개정을 하였고, 김정은이 집권한 후인 2012., 2013. 및 2016. 헌법을 수정보충한 후 최근 2019. 4. 11. 다시 수정보충을 하였는데 우선 제100조에서 국무위원회 국무위원장에게 ‘국가 대표’ 위상을 추가하여 대외적 활동의 폭을 넓혔고, 김정은 정권의 사회·경제적 노선이 대폭 반영되고 의미도 구체화시킨 점이 특징이다. 또 김정은 체제 들어 도입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제33조)를 국가경제 관리의 기본방식으로 제시하고,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제32조)라는 표현을 더하였다.³¹⁾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2016), 411면.

29) 윤상도·장철익, 『북한의 헌법』, 법원행정처(통일사법정책자료), 2010, 67면 참조; 사건으로 헌법의 최고규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러므로 헌법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헌법재판제도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헌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불문법적으로 존재하는 불문헌법 국가(영국 등)와 유사한 면이 있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한다. 다만 불문헌법국가에서는 법률보다 엄격한 별도의 헌법개정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한수웅, 앞의 책, 21면)에서 별도의 개헌절차를 요구(헌법 제97조)하는 북한 헌법은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북한은 불문법인 관습법, 판례, 조리(법의식) 등의 법원성을 부인한다(한명섭, 앞의 책, 101면). 결국 북한은 성문헌법 국가지만 마치 불문헌법 형식을 빌려 국가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고자 한다.

30) 한명섭, 앞의 책, 104면.

31) Midas August 2019. 연합뉴스; 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과 기업소에 보다 많은 경영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일선에 있는 공장은 확대된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인재관리권, 무역과 합병, 생산품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 등 10여 개의 권리를 갖게 된다. 이는 과거 ‘5.30 담화’, ‘우리식 사회주의경제관리’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었는데,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는 명칭으로 헌법에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공장과 기업소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지휘감독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http://blog.daum.net/007nis/15875200>(그 외에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선군사상’이나 ‘선군정치’ 같은 용어가 삭제되었는데 군부가 아닌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과거 헌법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한 ‘민족의 태양’ 등의 표현이 무더기로 삭제된 점은

그리고 김정은이 2013년 선군절 담화에서 제시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추가하여 제40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라고 수정하는 등 김정은 정권이 국정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교육과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헌법에 더욱 강조하면서,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제74조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의 잦은 헌법 수정보충을 국가중요정책사항을 그때그때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헌법의 규범력 확보에는 나쁘지 않은 신호로 생각된다.

(2) 북한 헌법에서의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 제도

1) 북한의 소유권 제도³²⁾

북한의 체제 변화에 따라 가장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은 소유권 분야라 할 수 있다.³³⁾ 지적소유권에 관련될 수 있는 부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사유화비율³⁴⁾은 1949년부터 1957년까지 공업(9.3% → 1.3%), 농업

북한이 최근 역대 최고지도자의 우상화 선전에서 ‘신격화’를 배제하는 움직임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32) 이하 최경수, 앞의 책, 13면 이하를 상당부분 참조하였다.

33) 북한에서 민법제정은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1950년에 제1초안이 제안된 후 1990. 9. 5. 민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되기 전까지 이를 사실상 재판규범으로 활용하였고, 현재 북한 민법은 1964년에 제정된 구소련 민법과 대동소이하게 판데텐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윤철홍, 앞의 논문, 56면.

34) 북한에서도 건국초기에는 명목상으로 토지 등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1954년부터 점차 소멸되기 시작하여, 1958년에는 거의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 소유권은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사업과 무역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 자본가인 소위 ‘돈주’가 등장하고 돈주의 자본으로 북한 경제가 운영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 돈주들의 지위는 높다고 한다. 현재 북한 내에는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436개의 장마당(시장)이 공식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청진과 같은 지역에는 25만 평방피트(약 2만 3200m²)가 넘고 연간 85만 달러의 정부 수입을 가져다 주는 대형 장마당도 있다고 한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01XXX1809108>.

(96.8% → 4.5%), 상업(43.5% → 12.1%)으로 전분야에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³⁵⁾ 이는 북한이 소유제도의 최종 목표를 ‘전인민적 소유’³⁶⁾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 민법 제37조는 역시 생산수단[직접 생산에 이용되고 물질을 재화를 창조하는 재산 예컨대 토지, 경작용(역축), 농기구, 공장건물, 기계, 원료,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부정하고, 소유 주체에 따른 소유 형태를 3가지(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로 열거하고 있다.³⁷⁾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1980년대 대외 개방 정책과 1990년대 이래 시장경제 부분 도입과 조화를 이루기는 어려웠고, 이에 1998년 헌법을 수정보충하고 지식재산권법을 제·개정하면서 1999년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2002년에는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등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³⁸⁾

요컨대 북한은 1998년 국내 경제 분야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여 생산수단의 국유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소유주체를 확대하고, 개인소유 범위를 넓히는 등 시장경제 원리를 일부 도입하

35) 『북한개요』, 통일연구원, 2009, 181면.

36) 1998년 북한헌법 제23조는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 체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형태”로서 사회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전인민적 소유로 이행하게 된다고 한다. 『북한개요』, 180면.

37) 윤철홍, 앞의 논문, 60면(소유권의 개념 역시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이며, 온갖 계급적 차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라고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고 있어, 결국 남북한의 민법상 소유권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를 지탱하는 근본이념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민법에서는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소유권을 소유제도의 이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남한 민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38) 2008년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중국 등 외자 유치에 주력하기 위해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법 등 외국인투자 관계법을 개정하였다.

였다. 종전에는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었으나 사회 단체도 소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³⁹⁾ 종전에는 “협동농장원들의 터밭정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정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개인소유에 속하도록 하였으나, 1998년 헌법은 “터밭정리를 비롯한 개인부업정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정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하도록 하여, 협동농장원들의 생산활동을 염두에 두었다. 이렇게 개인소유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터밭정리 외에 ‘그 밖의 합법적인 정리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소유란 ‘개인적이고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로 임금 또는 노동의 몫과 이로부터 구입한 소비품으로 구성되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상속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정의하고 있다.⁴⁰⁾

결국 개인소유권의 법적 성격은, 소비수단에 대한 개인적이며 소비적 목적의 소유일 뿐이고,⁴¹⁾ 개인소유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총생산물 중에서 교육·문화비용 등 사회적 소비기금으로 분배되는 것이 주된 것이며, 이 밖에도 텃밭의 경작을 비롯한 개인부업정리와 축산부업, 가내부업 등에 제한되는 협소한 것에 그칠 뿐이다.

이러한 북한 헌법, 민법에서의 소유권개념의 연혁은, 비록 최근 경제체제 안정을 위한 시장경제의 일부 도입과 그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인권으로서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당연히 우

39) 1992년 헌법 제20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고 하였으나 1998년 헌법 제2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하였다. 사회협동단체에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가 있다. 사회단체의 예로는 노동당, 직업동맹, 여성동맹 등이 있고, 협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북한개요』, 179면.

40) 윤철홍, 앞의 논문, 63면(국가소유권이 중요한데 국가소유는 사회주의적 전 인민 소유제에 대한 법률상의 표현이고, 이는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국가가 전 인민을 대표하여 ‘생산수단’을 점유하는 형태의 소유제를 의미하므로, 북한 민법 제45조에 규정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외에 무엇이든 국가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국가소유권의 객체는 광범위하며,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은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국가소유권보다 좁다).

41) 상세는 『북한민법 주석』, 법무부, 2014, 596면 참조.

리 법제와 매우 다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핵심적 차이는 여전히 생산수단은 철저히 국가소유권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개인소유권에 마치 지식재산권에 목적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적 목적’을 요건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적소유권’이 생산수단에 해당하는지, 소비목적 개인소유권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 등의 질문이 향후 통일 지식재산권법 구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북한 헌법에서의 지적소유권 제도

자세한 입헌배경 등은 알 수 없으나 1948년 헌법 제20조에 아래와 같이 저작권과 발명권 보호 규정을 두었고, 앞서 보았듯이 1998년 기존의 지적소유권 제도를 제·개정⁴²⁾함과 동시에 같은 해 헌법 수정보충 시 제74조에 발명권 외에 ‘특허권’도 보호대상으로 추가⁴³⁾한 이래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수정보충은 지적소유권 보호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구의 위치변경, 추가 등 구체화하는 과정임이 분명하므로, 북한정권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간주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2) 발명법 제정은 특히, 서방 선진국의 투자와 기술도입을 위해 국제 규범에 맞추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육소영·윤권순,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 32면(권리 부여를 위해 철저적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함으로써 외국 기업이나 투자자들을 의식하고 있고, 특허권 보호기간도 종전 15년간에서 5년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TRIPS협정에 가깝도록 하였다고 한다).

43) 과거 위와 같은 헌법규정이 있음에도 특허권을 자본가가 독점적 권리를 이용하여 발명이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막고 자기 혼자만이 더 많은 이윤을 얻는 제도라고 백안시하였던 태도에 비하면 1998년 이후 북한 지적소유권제도는 상당히 변화된 것으로, 저작권료, 발명 상금 등을 법제화한 것은 이른바 ‘정치도적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결합 원칙’에서 물질적 자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높아진 것의 방증이라고 한다. 윤상도·장철익, 앞의 책, 299면.

1948년 헌법(20조)	1972년 헌법(60조)	1992년 헌법(74조)	1998년 헌법(74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공민은 과학과 문학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u>창의고안자와 발명가에게 배려를 돌린다.</u>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공민은 과학과 문학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u>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u>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공민은 과학과 문학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그렇다면 우선, 위 조항과 우리 헌법⁴⁴⁾의 비교를 통하여 유사점을 살펴본다.

첫째, 위와 같은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는 명시적 헌법조항을 둔 입헌례가 거의 없음에도 북한 헌법은 1948년 헌법부터 이를 두고 있고, 이는 건국헌법부터 우리 헌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조항을 둔 대한민국과 연혁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남한에서는 독일, 일본 등의 입헌례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23조 재산권규정과 별도로 제22조 제2항을 두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논의가 있어 왔다.⁴⁵⁾

둘째, 조항의 위치에 있어서 제74조 1문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에 바로 뒤이어 지적소유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우리 헌법과 유사

44)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아래에서 보듯 양국 헌법상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은 이례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입헌 당시 상호 영향(특히 북한 헌법에 대한 우리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45) 입헌례는 이규홍·정필운, 앞의 논문, 90면 참조(80, 88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건국헌법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알려진 유진오 교수는 제14조 후문을 “저작자,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를 국가가 특히 보호한다는 규정을 헌법에 설치한 것은 각 국에 그 예가 많지 아니하나(와이말헌법[바이마르헌법] 제백사십이조,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항] 참조), 우리나라 헌법은 그 중요성을 특히 인식하고, 과학, 예술, 기술의 발달을 조장하기 위하여 본조를 설치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헌법 제22조 제2항에 상응하는 지적재산권 관련조항은 일반재산권조항과는 별도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제23조와의 관계에 대하여 독일, 일본 등은 일반재산권 조항이 존재하고 그 조항만으로도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헌법체계에서는 중복적 보장설이 다수설이다.

하나, 우리 헌법에 관하여는 그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재산권조항과 관련하여서 북한 헌법과는 매우 다르다.⁴⁶⁾

셋째, 조항의 내용에서 남북한 모두 ‘창작자’(남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 / 북한; ‘발명가와 창의고안자⁴⁷⁾’,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 보호를 규정하여, 창작법이 아닌 ‘상표권’이 일단 제외되어 있는 점이 유사하다. 각각 ‘법률로써’(남한), ‘법적으로’(북한) ‘보호한다’라고 보호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몇가지 차이점을 보면, 남한의 경우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⁴⁸⁾ 북한의 경우 발명가 외에 ‘창의고안자’를 규정하면서 ‘배려를 돌린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 발명권만 보호하다가 1998년 헌법 수정보충 시 비로소 ‘특허권’의 법적 보호를 규정한 점(1998년 발명법 등 각 지적소유권법을 분리·제정하면서 특허제도를 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등이 주목된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북한 헌법의 지적소유권 조항의 특이점은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는 표현이다. 이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헌법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 예로 들면서 북한 헌법의 실질적 작동으로서의 법의 지배가 실현되지 않은 근거로 드는 견해⁴⁹⁾도 있으나, ‘배려’라는 표현은 북한 헌법에도 1회만 등장하는 것으로

46) 이규홍·정필운, 앞의 논문, 107면(헌행과 같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은 조 내에서 제2항으로 규정하고 일반재산권조항 앞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헌법의 특성상 우리 헌법과는 전혀 다른 재산권보호체제를 택하므로—재산권조항이 제20조, 제24조 등에 위치—그 부분은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7) 창의고안자를 발명가와 동등하게(1992년 헌법 수정보충 전에는 창의고안자가 앞에 위치하였으나 수정보충으로 발명가를 앞으로 변경하였다)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규정을 둔 점이 이채롭다. 그러나 기존에 발명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보호되고 있었던 권리는 “특허권”, “발명권”, “창의고안권”이었지만, 2014년 개정 발명법에 의하여 북한에서 보호되고 있는 권리는 “특허권”, “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 “실용기술발명권”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창의고안자는 헌법에 그대로 남아 양자의 관계가 모호하다. 상세는 후술한다.

48) 직접적 맥락 없이 ‘과학기술자’가 1980년 헌법개정 시 도입되었는데 그에 대한 비판 및 ‘발명가’는 특허법상은 ‘발명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휘선택상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 저작자와 예술가를 중복하여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의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이규홍·정필운, 앞의 논문, 111면 참조.

로 사실 위와 같은 표현이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하위법률에서 언급이 없고, 헌법재판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북한에서 실질적 규범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기본권 제한적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을 법의 지배를 부인하는 근거로까지 삼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소 의문이다.⁵⁰⁾

3) 북한 법령(특히 지적소유권법)의 규범력

법형식적으로는 북한 헌법 제74조의 존재 등에 따라 제정된 발명법, 저작권법 등은 나름 짜임새 있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소유권제도 등 다른 헌법 조문들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지적소유권이 어떠한 위치를 갖는 것인지 쉽사리 단언하기 어려워지고, 게다가 북한 법령의 규범력에 대한 일반적 비판⁵¹⁾까지 고려한다면 북한 지적소유권법제의 규범력은 논의의 여지가 많은데, 뒤에서 논의할 헌법적 근거(형성 및 제한)에서 같이 다루어 본다.

(3) 북한 헌법에서의 과학기술 관련 규정 및 과학기술정책

1) 과학기술 관련 규정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은 경제난의 극복이라는 실용적 차원과 국가발

49) 정병화 외 2인, 앞의 논문, 407면.

50) 예컨대, 우리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문구 역시 많은 논란을 가져 왔고, 그 내용이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것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가 일반적 자유권의 성격을 부여하는 확장적 해석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라는 분석(한수웅, 앞의 책, 546, 550면)처럼 위의 규정은 향후 지적소유권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계기가 될 뿐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예컨대 위 문구는 발명법 제61조(발명가, 도입자에 대한 우대와 평가) “국가는 발명기술, 특허기술을 생산과 건설에 도입하여 인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발명가와 도입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며 평가하도록 한다.”의 헌법적 근거로 보이고 결국 발명자 보호의 취지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의 다른 부문법을 보면 주로 생산혁신자 등과 관련하여 배려를 돌리고 있다. 『북한법령용어사전』, 법제처연구원, 2017, 참조(검색어 ‘배려’).

51) 북한 당국도 이러한 북한의 법체계의 불명확성에 대해 자각했는지 2012. 12. 1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4호로 ‘법제정법’을 제정하고 2016년 북한법전을 통해 이를 공개하였다.

전의 장기핵심전략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IT산업집중 등 산업발전단계에서 추격형 보다는 첨단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약형의 발전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⁵²⁾

북한 헌법은 과학기술을 어느 헌법보다 자주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도 헌법 제127조(과학기술 조항)⁵³⁾가 지식재산권법제의 근거규정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고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인 특허권은 과학기술과 매우 밀접하며, 또한 저작권 등 다른 분야 역시 점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한다면 결국 지적소유권 제도의 유지 및 전향적 변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⁵⁴⁾

구체적 조항을 보면, 북한 헌법 제46조는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발전시키며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제50조는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라고 규정하고, 특히 최근 2019년 헌법 수정보충으로 제27조를 “기술혁명은

52) 「북한의 과학기술진흥과 IT법제 동향과 특징」, 법률신문, 2005. 9. 15자; “평양은 과학 도시의 면모를 부쩍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대동강변에 원자 모형을 본떠 지은 ‘과학기술전당’이나, 시내에 고층 건물로 이어진 ‘미래과학자거리’, 그리고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등은 이제 외국 언론도 화제로 삼는 평양의 랜드마크 구실을 한다”(오철우, 「석탄화학, 북한 주체과학의 상징…IT·공작기계도 상당수준」, 한겨레신문, 2018. 5. 21자).

53)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위 조항은 1962년 5차 헌법개정 시 제118조로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인데, 과학기술에 관하여 최초로 규정하였지만 국가의 과학기술발전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았고,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에 과학기술계의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규홍, 앞의 논문, 269면.

54) 2012년 북한 법전의 분류체제에는 과학기술과 지적소유권 및 채신관련 법률이 하나의 부문으로 되어 있다.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라고, 제40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라고 과학기술 부분을 강조하는 등 다수의 개정을 하였다.

북한 헌법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 강화 규정을 두었고 그중 일부는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로 보는 등 경제발전과 연계한 점은 우리 헌법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2) 과학기술정책과 발전 수준

① 전반적 발전 양상

앞서 보았듯이 북한은 과학기술강화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고⁵⁵⁾ 지적소유권 제도는 이러한 목적과 연계되게 되어 결국 양자는 1948년 북한 헌법부터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강화되면서 발전하여 온 양상을 보인다.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의 대략적 연혁은, 대개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중순까지 소련의 과학기술 모방기,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독자적 과학기술 개발기, 1980년 중반이후의 선진과학기술 중시기, 1990년대 후반에는 IT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도입기라는 분류가 있다.⁵⁶⁾ 최근 북한

55) “최현규 본부장은 과학기술 논문의 양과 질로는 북한이 아직 우리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낮지만 북한의 발사체 기술이나 핵융합, 레이저 기술, 컴퓨터 수치제어(CNC) 공작기계 기술을 비롯해 일부 분야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했다(오철우, 앞의 기사, 한겨레신문, 2018. 5. 21자); 후술하는 것처럼 발사체, 핵융합기술에 치중하여 물리학 등이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56) 발명: 펜과 잉크[2010년 1월 24일(일), 12시 29분]; 김정일, 폭포치며 쏟아지는 비날론숨을 보시었다[동년 2월 13일(토), 17시 47분]; 발명은 곧 애국이라는 숭고한 자작을 안고[동년 5월 1일(토), 15시 31분과 5월 17일(월), 18시 47분]; 숭고한 애국심을 지닌 발명가들[동년 6월 29일(화), 19시 27분; 동년 7월 8일(목), 17시 45분; 동년 7월 9일(금), 17

은 2011년부터 제4차 산업혁명을 지칭하는 용어로 ‘새 세기 산업혁명’을 사용하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북한이 강점을 가지는 정보통신기술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성과⁵⁷⁾를 보건대, 북한의 발명공보를 분석하면 1993년 이후 발간된 북한의 발명공보는 약 6,000건⁵⁸⁾인데, 2015년 한 해 동안 북한에서 발표한 논문은 총 55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 남한이 Pubmed[생명과학 및 생물의학 주제에 대한 참조 및 요약]을 담고 있는 MEDLINE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유 검색 엔진이다. 미국 국립 보건원의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NLM)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한다)에만 무려 34,000여 개의 논문이 발표된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적은 숫자라 할 것이다.⁵⁹⁾ 한편 2012~2019. 6.까지의 발명공보(월간) 책자 데이터 및 CD롬을 조사한 연구⁶⁰⁾에 의하면, 그간 등록된 북

시 45분[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자료센터-북한소식-일일북한TV프로그램편성표에서 발췌, 홍봉규, 앞의 논문, 268면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위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북한은 관련법령도 제·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까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발전’인 ‘제3차 5개년 계획’을 진행하면서 산업부문의 현대화를 목표로 그동안 국가과학원에 통합되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을 대폭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에는 조선중앙TV를 통해 발명관련 내용을 연속보도한 바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위 기사는 “우리식”을 강조하는 ‘주체’의 과학기술은 북한 과학기술의 토대이다. ‘석탄화학’ 또는 ‘탄소하나(C1) 화학’은 그 사례다. 최 본부장은 “석유자원을 얻기 힘든 북한에선 석탄을 이용한 화학을 발전시켰는데, 이 때문에 석유화학이 주도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선 석탄화학, 즉 ‘탄소하나 화학’이 주류로 자리잡았다”고 전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cience>.

57) Geum Hee Jeong · Sun Huh, “Bibliometric analysis of publications from North Korea indexed in the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from 1988 to 2016”, *Sci Ed 2017 4(1)*, 24-29; 위 논문 중 관련부분을 2018. 5. 2.자 과학이 있는 삶(<http://thesciencelife.com/archives/2153>, 북한의 과학 수준은 어느 정도 일까?)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58) 박종배, 앞의 책, 71면.

59) 나아가 WIPO에 의하면 북한은 2017년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3건의 특허와 5건의 상표를 출원하였다고 한다. 1990년 이래 한 해 평균 2~3건을 출원하여 매월 평균 1,200여 건을 출원하는 한국과는 격차가 매우 크다고 한다. 한명섭, 앞의 책, 255면.

60) 최현규, “발명공보로 본 최근 북한 특허활동 현황”, 제2회 남북 지식재산권 포럼(한반도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공유), 2019. 12. 10. 발표자료(특허보다는 발명을 주로 신청하고, 특허 소발명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의 대발명은 2,656건(발명 1,826건, 특허 830건), 소발명(실용기술)은 15,511건(발명 15,195건, 특허 316건)으로 전체적으로 18,167건이라고 한다. 대발명 분야는 의료가, 소발명 부분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가 최다이고, 출원인은 대학이 29.2%, 기업이 25.7%를 차지하며, 특히 김일성종합대, 김책공대, 국가과학원 등 특정기관 중심으로 출원이 이루어지는데 함흥의과대학(김상훈 교수) 및 약학대학의 성과가 주목할 만하다고 한다.

특허출원 현황에서 보듯 북한에서 많은 논문을 낸 분야는 IT산업과 핵무기 등을 발전시키려는 의도 때문인지 물리학, 그리고 그 뒤를 수학이 따르고 있는 반면, 남한에서 인기분야인 생명과학 관련한 특허 및 논문이 특정인 혹은 기관에 집중되었을 뿐 전체적인 숫자는 적다 할 것이다. 추측컨대 현대의 생명과학은 뛰어난 한 명이 이끌어 가는 시기를 지나, 막대한 자본력과 정보력, 국제간 상호교류라는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연구자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의 과반수가 중국과 공동연구를 진행한 것이고 나머지 중 상당수도 독일과 호주와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⁶¹⁾

② IT 분야

북한이 과학기술 중 집중하고 있다는 IT기술⁶²⁾을 살펴보면, 북한의 관련

61) 다음과 같은 인터넷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 최현규, “북 응용과학과 남 첨단과학 만나면 시너지 클 것”,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13726>>, 검색일: 2016. 9. 7.

62) 「1961년 북한 최초의 컴퓨터로 ‘9·11형 만능 전자계산기’를 개발한 이래 북한은 지속적으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관심과 투자를 쏟아 왔다. 북한정보기술 전문 칼럼니스트인 강진규 씨는 “말레이시아에 세워진 북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주식과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개발해 준다는 홍보문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인도 기업이 주관하는 국제코딩대회에서 1, 2위를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대 학생들이 차지한 소식을 접하고 기술 수준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북한 과학기술 전문 뉴스 사이트를 준비 중인 그는 북한 뉴스들에선 인공지능, 나노기술 같은 첨단 분야도 곧 잘 다뤄진다고 전했다. 북한의 바둑 프로그램 ‘은별’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음성과 문자 인식, 다국어 번역 등에 인공지능망 기술이 적용된다는 소식도 있었으며 “김책공대에서 개발된 다국어인식 프로그램 ‘신동’은 문자인식률이 99.7%나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 조직으로 국가나노기술국이 창설됐으며 해마다 나노기술 전시회가 열린다. ‘시엔시’(CNC)는 북한에서 첨단 기술혁신을 상징하는 용어다. 강호제 소장은 “컴퓨터 수치제어로 정밀하게 기계를 만드는 기계(공작기계)의 핵심 기술을 가리키는데, 북한은 시엔시 공작기계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며 “시

정책은 21세기 산업발전의 추세에 비추어 시대적 조류와 방향을 인식한 이른바 ‘단번도약론’에 따른 현실적 대안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주력은 온나라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정책을 통하여 추진되는데 이는 컴퓨터로 기계의 작동을 자동 조종하는 기술을 말하며 국방 분야에서 개발되었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 민간 분야에도 확대 적용되었는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의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⁶³⁾

그러나 북한의 인터넷은 일반적인 ‘인터넷’으로 볼 수 없고 ‘외부로의 접속이나 외부에서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일종의 폐쇄망’인 인트라넷 개념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북·중 국경지역인 단둥과 신의주 간에 광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전 세계로 연결되는 인터넷망에 연결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북한주민들은 국외 사이트에는 접속할 수 없게끔 막혀 있다. 현재 북한이 구축, 운영 중인 인트라넷은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 호스트 서버를 둔 ‘광명’으로 이를 통하여 위 통보사가 개발한 검색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검색, e-mail, 전자게시판, 웹사이트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인트라넷 연결은 컴퓨터 보급률이 전반적으로 낮아 일반인보다는 주로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컴퓨터 사용이 활발할 뿐이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엄격하게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국외로의 접속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이미 5G서비스를 시작한 우리와 달리 북한은 아직 2G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나 무선망을 인터넷 접속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로, SNS는 불가능하되 다만, 만일 서구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하게 되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인터넷망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되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해가 되는 사이트는 폐쇄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엔시는 혁신기술, 기술혁신의 상징어로도 폭넓게 쓰인다”고 말했다.」 오철우, 앞의 기사, 한겨레신문, 2018. 5. 21자.

63) 이세훈, 「북한식 4차 산업혁명 ②」, 『문화저널 21』, 2019. 2. 21.(북한은 2015년 세계적 프로그래밍 경연대회인 ‘코드 셰프’에서 구글을 제치고 1위를 한 바 있는 등 수재급 인력을 17만여 명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2억 500만의 초대형 도시 상하이의 교통관제 시스템도 북한의 기술력이 발휘된 것이라고도 한다).

한다.⁶⁴⁾

이렇듯 북한 안에서만 연결되는 인트라넷과 관련하여 2004~2007년까지 3년 동안 인트라넷용 광케이블을 주요 도시와 읍까지 연결했고, 평양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70~80Mbps, 지방 속도는 10Mbps로 한국의 2000년 수준이라고 한다.⁶⁵⁾⁶⁶⁾

이렇듯 북한의 과학기술은 수준 높은 분야도 일부 있고, 상당히 뒤진 부분도 병존하는 것이 현실인데, 북한을 단순히 산업수준이 낮은 저개발 국가로만 보고 저임금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이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만나면 경제성장이 될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에 근거한 협업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존재한다.⁶⁷⁾

64) [출처] 북한의 인터넷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otsystem&logNo=221456659509>.

65) 2006. 6. 평양의 한 누리꾼이 ‘번개’를 제의해 실제로 300여 명이 평양체육관에 모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가정에서의 인트라넷접속이 모두 차단됐고 평양의 PC방들은 모두 폐쇄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2015. 1. 다시 개인에게 ‘광명’망이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지금은 다시 광케이블을 개인에게까지 재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는 400만 대의 휴대폰이 있는데 이는 2012년의 4배라 하고 이는 전체인구의 6분의 1에 이른다고 한다(<https://ko.wikipedia.org/wiki>); 북한에서는 앱스토어가 오픈라인 매장에 존재하여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특정 앱을 깔아 달라고 요구하면 업로드를 받아 주는 방식이다.

66) 비록 북한에서 현재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복제물 유입에 기한 광범위한 저작권침해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인트라넷의 특성상 내부적인 자료 공유는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누군가 취득한 우리 저작물(예컨대 영화나 드라마)을 인트라넷을 통하여 대규모로 불법유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우리 법에 의한 저작권침해 논의는 조만간 닥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김영석, 「북한 주민 "노트텔로 남한 드라마 보지 말입니다"」, 국민일보 2016. 4. 19. 「북한 주민들이 최근 들어 한국 물품에 대한 세관 검열과 시장 단속이 강화됐지만, 노트텔(EVD플레이어)을 중심으로 한국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고 북한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19일 보도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은 “당 대회는 당 대회이고, 한국영화 시청은 (이제는 하나의) 문화생활”이라면서 “통제할수록 더 보고 싶은 것이 인간 본능”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주민은 이어 “지금은 큰 행사(당 대회) 준비기간이라 (당국에서) 불순물 시청을 단속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단속에 이미 적응한 주민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67) 이세훈, 「북한식 4차 산업혁명 ③」, 『문화저널 21』, 2019. 2. 28.

3. 북한 지적소유권의 헌법적 형성 및 제한 근거

(1) '헌법적 규범'의 범위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교시'라 함은 북한의 실질적 최고지도자, 곧 '수령'의 사상을 의미하고 이는 김일성, 김정일 및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최고지도자 모두의 사상을 의미한다.⁶⁸⁾ 그리고 "북한법은 규범력이 없다."는 인식에 대한 논거는 결국 '교시가 법 위에 있다'는 것이다.⁶⁹⁾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헌법적 규범'을 성문헌법뿐 아니라 교시까지 넓혀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결국 지적소유권의 헌법적 근거도 마찬가지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교시'의 하위단계라는 헌법과 개별법(부문법)에 함께 관통하는 원리가 존재하는지를 찾는 작업이 1단계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적어도 북한에서 헌법과 개별법이 내용적 일관성이 없다면 북한 헌법은 명목 또는 장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는 법령이 그때그때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헌법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추정되어도 크게 틀린

68) "북한에서 수령의 교시가 헌법 상위인 점은 명확하나 '규범'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헌법 제3조가 '지도적 지침'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수령의 교시가 북한의 최고 법규범인 북한 헌법의 기준이자 방향타가 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규범'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에서 최근 북한의 헌법을 집대성한 저술에서도 '최고상위규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라고 한다. 권영태, "교시우위론과 북한법의 규범력", 『북한법연구』, 제21호(2019), 193면.

69) 「북한은 법 위에 교시와 당정책이 있음을 공식으로 표방하고 있다. "법 위에 교시와 당정책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많은 북한 문헌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도 변함이 없다. 예컨대 2005년에 발간된 『정치법률연구』는 법을 '당의 정책적 요구와 과업을 모든 성원들에게 법적의무로 규정'한 것으로 설명한다. 당정책은 '수령의 혁명사상'의 '구현'이다. 곧 법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한 당정책을 모든 성원들에게 법적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법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규범과 행동준칙'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교시우위론은 헌법 제3조와 제11조를 통해 규범적으로도 확인된다. 북한 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공표하고 있고,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권영태, 앞의 논문, 180면.

것을 아닐 것이다.⁷⁰⁾

지적소유권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북한 헌법 제74조와 개별법은 체계적으로는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으로 헌법적 규범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헌법적 규범으로 볼 수 있는 ‘교시’ 등에 지적소유권에 대한 근거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것으로 최상위규범에 지적소유권의 존재근거가 확실히 포함되어 있다면, 북한 헌법 제74조는 그 자체로서 최고규범의 명시적 현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제정된 각종 지적소유권 관련 부분법들의 형성근거가 보다 공고하게 확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작업은 개별법들이 (최)상위규범에서 허여된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인지, 나아가 향후 어느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될 것이다.⁷¹⁾

(2) 북한에서의 지적소유권 보호정책과 한계

1) 보호정책

북한의 2019. 4. 11. 북한 헌법 수정보충에서 보듯이 지도자의 정치이념을 최대한 헌법으로 고정하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추측되고, 지적소유권 제도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헌법 제74조의 변천과정에 투영되어 온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과연 교시와 당정책으로 표출되는 북한의 최상위규범의 입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많은 자료가 공개되지 아니한 관계로 매체에 보도된

70) 권영태, 앞의 논문, 189면에서는 그 외에 법 위에 교시가 있는 현상이 과연 북한만의 현상인가를 확인하는 방법과 교시와 법의 내용을 교차 비교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북한 헌법이 ‘체제 선전을 위한 장식물에 불과’하다거나 ‘대외적이고 명분용’이라는 점은 교시의 내용과 다른 ‘좋은’ 내용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을 때 성립하는 명제가 아닐까라는 의문제기이다. 그러나 이는 위의 내용적 일관성 확인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71) 북한 지적소유권의 헌법적 형성근거 및 법체계의 내용적 일관성이 인정될 경우 권영태, 앞의 논문, 192면에 의하면 “북한법은 규범력이 있고 그 원리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명제로 정립된다고 한다.

것만 몇가지 살펴보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우선 지식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약을 위하여 1967년 설립된 UN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1974년에 가입한 후 WIPO 대표단(단장 세계과학원원장 브파지 신젤)은 2007년에 방북(6.12.)하여 「상표, 공업도안, 원산지명에 관한 민족토론회」(6.13.- 6.14. 인민문화궁전)에 참가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지적소유권 토론회를 개최하여 ‘마드리드체계와 「북한」의 경험’ 등을 주제로 토론하였다(6.14. 중앙통신). 작년의 토론주제는 ‘지적소유권과 사회적 인식’, ‘발명과 특허의 효율적 이용’, ‘저작권·공업소유권의 개념과 국제적 표준’, ‘무역에서 상표의 역할’ 등이었다. ‘상표, 공업도안, 원산지명’으로 한정하여 ‘지적소유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중점을 두었던 작년에 비하여 다소 진전된 면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의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WIPO대표단을 초청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토론회를 2년 연속 개최한 것은 날로 세계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전문가들의 신기술개발에 대한 의욕고취 및 국제법에 대한 사전학습을 통해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⁷²⁾

다음 북한은 북한청년들에게 과학기술의 발명과 기술혁신을 독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절’(8. 28.)에 즈음하여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를 통해 북한청년들의 발명을 독려한 바 있고, 2014. 9. 16.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제9차 평양 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 개막식을 갖고 뉴질랜드 등 20여개 나라의 자료를 전시한 바 있다고 한다.⁷³⁾

그리고 북한은 2017년 제15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2018년 국가발명전람회(8. 3 - 8. 13. 과학기술전당, 1천여 건 출품)을 개최한 바 있으나, 2019년에는 관련보도가 없다고 한다.⁷⁴⁾

72) 북한소식-분야별소식대외관계 2007-06-19, <http://unibook.unikorea.go.kr>). 홍봉규, 앞의 논문, 270면(재인용).

73) 북한 ‘조선중앙통신’, 2014. 8. 19. 최은석·허인, 앞의 책, 18면에서 재인용.

74) 최현규, 앞의 발표자료, 45면.

2) 한계 및 의미

앞서 보았듯이 폐쇄사회인 북한에서 헌법적 규범을 통하여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는지는, 북한 헌법 규정과 개별 지적소유권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확고하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남한이 지식재산권을 자본주의 방식으로 확고히 보호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보호함에 반하여, 북한은 사유재산권 자체의 보호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지적소유권을 재산권으로서가 아닌 ‘헌법적 규범으로 인정된 별도의 권리’로 구성하여 보호하는 방식으로 보이므로 더욱 그러할 것이다. 재산권 보장이라는 든든한 뒷받침 아래에서 어떠한 이론 구성을 받게 되느냐의 문제가 다투어지는 한국 등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게, 자칫 외로운 섬처럼 보장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보호의 한계(존치 여부를 포함)가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체제 중립적이라 할 수 있을 과학기술 분야가 남북한 모두에서 확고하게 보호·지원받고 있는 것과 상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일견 북한 체제에 이질적인 지적소유권 제도는 과학기술의 보호라는 강한 명제를 통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추측도 가능할 것이다. 남한 지식재산권법에서 헌법적 근거 및 한계를 논의하는 것이 지식재산권법의 해석 및 법개정에 중요한 시발점이자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도 헌법적 규범에서 어떤 식으로 지적소유권법을 이해하고 도입하여 왔는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나아가 그 외에 향후 남북한 교류 및 통합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임은 앞서 보았다. 여기서 앞서 본 북한의 헌법적 규범, 즉 교시와 이를 투영한 성문헌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적소유권 보호규정이 존재하고, 또 북한 당국이 세계적인 지적소유권 보호 경향을 알고 있다고 생각되며, 과학기술발전의 동력으로서의 지적소유권제도가 언젠가는 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비록 북한 지적소유권 제도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재산권 제도와는 체계정합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현재 불완전 혹은 불안정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점진적이나마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여 본다.

III. 북한 헌법에 비추어 본 지적소유권 법제의 특징

1. 지적소유권법의 목적 및 지도통제⁷⁵⁾

북한 지적재산권법은 각 법 제1장을 ‘기본’편으로 두고 있는데 그중 제1조 ‘사명’ 조항을 보면, 예컨대 발명법의 경우,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의 리용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인민경제의 발전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라고, 저작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법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⁷⁶⁾

그러나 발명법 제3조는 “국가는 발명권 및 특허권등록신청절차를 정하고, 이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라고, 제4조는 “국가는 발명권 및 특허권등록심 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제5조는 “국가는 발명권 및 특허권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것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라고, 제6조는 “국가는 발명창조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발명의 창조와 도입에 필

75)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기구를 전반적·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는 없으나, 우리 특허청에 해당하는 북한의 관련기구는 내각의 국가과학원 산하에 있는 발명총국(Invention Office of DPRK)이라 하고, 품질감독국 산하에 있던 상표 및 공업도안처는 품질감독국으로 독립하였고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한명섭, 앞의 책, 253면. 그러나 김효정, 「북, 지재권 제도마련 박차... ‘지적소유권국’ 설치’ 연합뉴스, 2019. 8. 18.은 북한이 저작권사무국까지 포함한 ‘지적소유권국’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76) 어순의 차이를 들어 그 목적에 우리법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홍봉규, 앞의 논문, 273면; 가장 최근인 2014년 개정 발명법 이전에는 다른 현행 지적소유권법과 같이 “엄격히 세워”라고 규정하였으나 2014년 발명법 개정 시 ‘엄격히’를 삭제하였으나 이유는 알 수 없다.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과학기술발전이 들어 있는 점이 다소 특이한데, 제9조(저작권의 대상) 제1호를 ‘과학논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로 규정한 점에서 보듯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최대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요한 투자를 늘려나가도록 한다.”라고, 제7조는 “국가는 발명사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라고, 제8조는 “국가는 발명사업에서 나라의 안전 및 중요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법, 공안도안법, 저작권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여 지적소유권 관련 신청, 심의, 보호, 사업 등에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다음, 마지막 장(예컨대 발명법 ‘제5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각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규율하고 있는 점이 매우 독특한데, 그 내용은 지적소유권 관련 사업에 있어서, 국가가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제59조⁷⁷⁾), 발명대리기관의 조직운영(제60조), 발명가, 도입자에 대한 우대와 평가(제61조),⁷⁸⁾ 발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제62조) 등의 조항이 있고 행정적 책임(제63조)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발명행정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발명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특허권등록을 직접 신청하였을 경우… 5.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는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주었을 경우… 8. 발명권,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9. 특허기술을 리용하고 발명가에게 해당하는 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한다. 그리고 형사적 책임(제64조) 규정을 두어 “이 법 제63조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⁷⁹⁾라고 하여, 역시 국가의 개입을 명확히 하고

77) 제2항 “발명행정기관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보호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78) 앞서 보았듯이 북한 헌법 제74조가 규정한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의 직접적 이행입법이라 할 것이다.

79) 북한은 우리와 달리 각 부문법에는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라고만 규정하고 형사처벌은 모두 형법에 규정을 두고, 행정처벌에 관한 내용은 모두 행정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특징이 있다. 그나마 2014년 발명법 개정으로 행정처벌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행위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지적소유권법 일부 조문구성과 과학기술의 관련성을 개괄적으로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소유권을 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으로 예컨대, 북한 발명법이 현재의 상태(발명권과 특허권으로 양분)로도 유지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산수단 국유라는 기본원칙, IT 산업 등의 발전은 주로 무기개발 등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⁸⁰⁾ 등 복합적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대 저작권법에서 중시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기술적 보호조치 등 관련 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인트라넷망만 개인에게 허용되는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⁸¹⁾ 오히려 앞서 보았듯이 과학기술의 보호가 선도적으로 북한 지적소유권 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학기술정책상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지적소유권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를 위와 같이 열거한 것은 이전 법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된 것이라고 한다. 한명섭, 앞의 책, 291면[법규의 설명 및 사례는 291면 이하 참조. 다만, 하나의 예만 들면 “형법 제 117조(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 침해죄)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한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참고로 노동교화형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징역형이고, 노동단련형은 범죄자를 교화소(교도소)가 아닌 일정한 장소에 보내 노동을 시키는 형벌로 남한에는 없는 형벌이라 한다.

80) 최현규, 앞의 발표자료 및 실제 발표내용에 의하면 북한의 발명공보에는 ‘발명자’는 있으나, ‘출원인’이 공란인 것들이 제법 존재하는데 사회주의 기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고 한다.

81) 이런 점은 최근 디지털 저작권 논의가 IT 과학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최근 남한의 컴퓨터 프로그램(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 판결 등에서 보듯이 세계 각국은 디지털 저작권 문제로 심각한 논의 중이고,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2019년 ‘EU 인터넷저작권 지침’이 마련되어 저작권자 측과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입법화되는 상황(김문환, 저작권문화 2019. 12.)인데 북한은 IT 기술 강국을 자처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 향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발명법

(1) 입법연혁

사회주의의 발명특허제도가 북한에 영향을 준 계기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 초기모델이 그렇듯이 구 소련의 특허제도를 계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사회주의국가의 특허제도에서는 ‘발명자증서’가 발명자보호의 유일한 수단이었고 발명권의 권능으로서 주어지는 보상은 발명자의 노동 및 업적을 치하하여 국가가 ‘정신적’보상을 수여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에게 사적 재산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았으며, 결국 사회적 자산임을 본질로 하여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같은 기초에서 북한에서는 발명권이 1948년 헌법부터 보호되다가, 1972년 헌법에서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고 추가 규정되었고, 1998년 헌법에서 비로소 ‘특허권’이 추가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와 같은 근거에서 북한은 1967년부터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발명과 창의고안을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양자를 하나의 법체계 속에서 규정하였다. 특히 1986년 개정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은 “발명”에 대하여 이미 알려진 과학기술에 비하여 그 내용이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과학적 기술성공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기계설비, 장치, 제품, 기술공정, 생산방법과 같은 과학기술적 제안들이 속한다고 규정하였고, 또한 창의고안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기술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범위에서 지금 있는 기계설비, 장치, 기술공정, 생산방법의 일부를 보충 또는 개선함으로써 보다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주는 기술적 성과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1998. 5. 13. 북한 최초의 “발명법”이 제정되었는데, 이후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발명법은 2014. 12. 10. 개정된 것이다.⁸²⁾ 그 결과 과거 북한에서 보호되고 있었던 권리는 “특허권”, “발명권”, “창의고안권”이었지만, 2014년 개정 발명법에 따르면 북한에서 보호되

고 있는 권리는 “특허권”, “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 “실용기술발명권”으로 늘어났다.⁸³⁾ 그럼에도 창의고안자는 최근 2019년 헌법 수정보충 시에도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발명법이 제정된 후인 2001. 6. 창의고안에 대한 규정이 제정된 점, 북한 형법에 아직 창의고안관련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점 등의 이유로 발명법이 기존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대체하는 법률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바, 2001년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은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 실용기술특허권과 실용기술발명권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⁸⁴⁾도 있으나 위와 같은 문제점은 입법상의 오류로 볼 것이고 사실상 발명법으로 통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⁸⁵⁾

(2) 발명법의 특징

첫째, 완성된 발명에 대하여 두 개의 권리인 발명권과 특허권 중 하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⁸⁶⁾ 발명권은 북한에 존재하는 독특한 권리로, 북

82) 2014년 개정 발명법은 5장 6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1999년 개정 발명법이 5장 43조로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조문이 21개나 증가한 것이다. 변경의 상세는 이주환, 앞의 발표문, 65면.

83) 제21조 (실용기술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발명수준은 없어도 신구성이 있고 도입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서는 실용기술발명권이나 실용기술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발명수준이란 “그 기술에 숙련된 자가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발명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제20조 제2호)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진보성’ 개념에 해당한다.

84) 이주환, 앞의 발표문, 65면[일반적으로 발명법이 기존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대체하는 법률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윤선희, “남·북한 지적재산권법의 통일화방안 연구”, 『중재연구』, 제15권 제3호(2005), 143면). 그리고 발명법이 제정된 후 2001년 6월 “창의고안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창의고안에 대한 규정” 역시 기존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대체하는 법률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박정원,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39면), 위 논문, 63면.

85) 한명섭, 앞의 책, 269면(창의고안은 실용기술발명권과 실용기술특허권으로 대체된 것이라고 한다).

86) 발명권 및 특허권의 본질에 대한 분석은 홍봉규, 앞의 논문, 279면 이하 참조; 참고로 특허제도에서의 용어상 차이를 보면 우리의 ‘출원’은 ‘신청’으로, ‘보정’은 ‘현지료해’로, ‘심사’는 ‘심의등록’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출원’이라는 용어의 문제점은 박준석, “출원” 용어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한 개정법 상의 특허출원표시 제도 고찰, 『선진상사법률

한은 발명권에 대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새롭고 발전적이며 공업적으로 실현하여 보다 좋은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부여되는 인격적 권리 및 재산권 권리로서, 발명자는 발명의 창조자로서 발명의 과학적 기술내용과 그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일정한 국가적 및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⁸⁷⁾ 발명권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 신청을 통하여 보상금 및 명예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명자에게 부여되는 인격적이며 재산권인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발명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발명권을 획득한 발명자에게 자신의 발명에 대한 실시권이 인정되지 않고, 당해 발명에 대한 실시권은 국가에 귀속되는 특징이 있다.⁸⁸⁾ 다만 발명자는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과 발명권을 모두 획득할 수 없고, 특허권을 획득할 것인지 혹은 발명권을 획득할 것인지 신청절차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⁸⁹⁾

둘째, 북한에서의 심의등록은 출원된 발명의 정확성을 검토, 평가하는 행위인데, 발명권과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의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등록기관에 접수하여 당해 우리 법에 의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심사받게 되는데 해당 북한 발명법 제20조는 ‘발명권,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제목 하에 “1.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 있다는 것은 신청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새롭다는 것이다. 2. 발명수준이 있어야 한다. 발명수준이 있다는 것은 그 기

연구』, 80호(2017), 참조.

87) 한명섭, 앞의 책, 258면에서는 북한만의 특수한 제도는 아니고 기존 사회주의국가들의 산업재산권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88) 한명섭, 앞의 책, 259면.

89) 이주환, 앞의 발표문, 62면. 발명법 제9조는 “...발명권, 특허권, 실용기술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 가운데서 어느 하나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발명권과 특허권은 첫째, 발명에 대한 이용권 보유자가 다른 점(발명권—국가가 이용권 보유, 특허권—특허권자가 이용권 보유), 둘째, 권리의 존속기간의 차이(발명권—일반적으로 무기한, 특허권—15년), 셋째, 관련비용부담(발명권—신청료 등 부존재, 특허권—수수료, 연차료 부담), 한명섭, 앞의 책, 260면.

술에 숙련된 자가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발명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도입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도입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발명을 공업, 농업, 수산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⁹⁰⁾ 다만, 1986년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및 2014년 개정전 발명법은 발명의 요건으로 ‘경제적 효과성’을 들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특허청은 심사할 때 기술적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처럼 심의등록항목 중에서 경제적 효과성을 포함시킨 것은 과학기술과 인민경제를 연계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판단되지만, 우리가 특허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점이라고 파악하는 견해⁹¹⁾가 있다.

셋째, 북한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을 실시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권리와 협의에 의하여 실시료 혹은 사용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책정하는 실시료 혹은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해당 지적재산권을 실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⁹²⁾ 나아가 북한주민 혹은 북한기업이 외국에 특허권, 상

90) 발명법 제21조는 신규성, 도입가능성만 있으면 발명수준이 없어도 실용기술발명(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다.

91) 종전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관련법에서는 ‘경제적 효과성’이라는 문구는 없었는데, 최근 발명법으로 대체하면서 북한은 경제에서의 자력갱생을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IT산업을 성장전략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한다. 홍봉규, 앞의 논문, 272면. 그러나 육소영·윤권순, 앞의 논문, 51면에 의하면 “내용에 있어서 신규하고 진보적이며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탁월한 기술적·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부여한다.”라고 이미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규정되었었다(박종배, 앞의 책, 152면). 1999년 개정 발명법은 발명을 “이미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과학기술의 성과”로 정의하여 사실상 위 사항을 수계하였으나 2014년 개정 발명법 제2조는 “발명을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해결안”이라고 정의하여 기술경제적 효과 요건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92) 공업도안법 제43조(공업도안사업료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요금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공업도안사업과 관련한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상표법 제45조도 유사)로 규정하여 위와 같이 설명이 가능하나, 발명법 제27조(특허권등록의 수속료금)는 “특허권등록신청자는 신청, 심의, 등록과 관련한 해당한 요금을 발명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라고 하여 문언상으로는 등록과 관련된 비용만 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권, 디자인권을 등록받기 위하여 출원하려면 담당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⁹³⁾ 특히 상표권과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담당 국가기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⁹⁴⁾ 이러한 북한의 지적재산권법 규정들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외의 사항 예컨대, 2014년 개정 발명법 제18조가 규정하는 발명으로 인정될 수 없는 대상,⁹⁵⁾ 제19조의 발명권,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발명⁹⁶⁾ 등은 대체로 우리 특허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99년 개정 발명법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1986년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은 특허권의 침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고, 우리 특허법상 특허침해금지청구권 혹은 민사집행법상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2014년 개정 발명법은 명문으로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이 특허권의 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그것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우리 민사집행법상 특허침해금지가처분과 같은 제도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2014년 개정 발명법은 명문으로 특허권자의 구제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였지만, 침해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아닌 발명행정기관에게 해당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93) 발명법 제26조(신청의 위탁) “우리나라의 신청자가 다른 나라에 특허권등록을 신청하거나 다른 나라의 신청자가 우리나라에 특허권등록을 신청하려 할 경우에는 발명대리기관에 위탁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신청자는 사전에 다른 나라에 신청하려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발명행정기관에 내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상표법 제12조, 공업도안법 제18조.

94) 공업도안법 제18조, 상표법 제12조.

95) ① 발견,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② 미학적 창조물, ③ 정신활동이나 유희, 경영활동을 위한 규칙과 방법, ④ 기술적 해결이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⑤ 정보의 표시방법

96) 조선민족의 고상한 풍속과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거나 사회공동의 이익에 저해를 주는 대상, 식물이나 동물변종 혹은 동식물의 순수 생물학적인 사육 및 재배방법, 사람이나 동물의 수술방법, 치료방법,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방법과 관련한 발명에 대하여서는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 원자핵변환의 방법으로 얻어진 물질에 대한 발명은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

에 대하여 북한 사법기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다만 2014년 개정 발명법이 인정하고 있는 특허침해중지요구는 발명행정기관이 해당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명행정기관은 해당 법기관에 특허침해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사법기관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2014년 개정 발명법은 남한 특허법상 보상금청구권과 동일한 제도로,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이 공개된 이후부터 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3자가 당해 발명을 실시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북한 발명법상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등록신청일로부터 15년이고,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5년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남한 특허법상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20년이고, 예외적으로 5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⁹⁷⁾

3. 다른 지적소유권법

(1) 상표법 및 공업도안법⁹⁸⁾

북한에서는 상표법과 공업도안법이 1998년 각 제정되기 이전에는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위 규정은 1968. 1. 1. 제정된 후 1983년, 1986년 및 1991년에 개정되었다. 그 후 제정된 북한의 공업도안법은 3차례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업도안법은 2011. 12. 21. 개정된 것이고, 상표법은 제정 후 6차례 개정된 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표법은 2012. 11. 13. 개정된 법이다.

97) 이상의 요약은 이주환, 앞의 발표문, 67면.

98) 공업도안은 특허권에 유사한 창작법이므로 북한 헌법 제74조로 보호될 소지가 크나, 상표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단 지식재산권 헌법조항으로는 보호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남한에서 상표권은 일반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헌법재판소도 상표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제23조 재산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도 제22조 제2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 2003. 7. 24. 선고 2002헌바31 결정),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닌 북한에서 어떠한 이론적·헌법적 근거로 상표를 보호하는지는 향후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현행 북한 공업도안법상 공업도안의 정의는 우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와 거의 일치하지만, ‘심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북한 공업도안법은 신청된 공업도안의 등록을 거절하기 위하여, 북한 상표법과 동일하게 공업도안으로 등록할 수 없는 도안이라는 부등록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디자인보호법이 디자인등록요건인 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규정함과 동시에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는 디자인이라는 부등록사유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방식과 차이가 있으며, 북한 공업도안법상 공업도안권의 존속기간은 공업도안신청일로부터 5년이고, 공업도안권자의 신청에 따라 5년의 기간 동안 두 번의 연장이 가능한데, 우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디자인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행 북한 상표법 제2조는 상표도안창작에는 ‘1. 상표도안을 보기가 좋으면서도 의미가 뚜렷하고 특성이 살아나게 형상하여야 하고, 2. 상표도안을 인위적으로 과장하지 말고 문화적으로 볼 맛이 나게 형상하여야 하며, 3. 필요한 경우 만화적으로 생동하면서도 실감이 나게 형상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하여야 하고, 4. 너무 원색만 써서 천한감이 나게 하지 말고 상표의 특성에 맞게 색을 조화롭게 잘 써야 하며, 5. 규격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공통된 내용들과 표기방법을 정확히 지켜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상표법 제21조는 대체로 우리 상표법 중 일부와 유사한 부등록 사유 10가지를 들고 있으나 “10. 북한을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 또는 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나 기업이 북한에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출원한 것에 대하여, 상표권을 등록하여 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⁹⁹⁾ 북한 상표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등록신청일로부터

99) 이주환, 앞의 발표문, 69면. 그러나 사실상 남한에서 신청한 상표출원은 거의 모두 거절되지만 제10호를 들어 거절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남한출원인은 부득이 하게 유럽

10년이고, 상표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씩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한 상표법과 거의 동일하지만, 우리 상표법상 상표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상표등록출원일이 아닌 상표설정등록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저작권법

우선 저작권법의 특유한 현황을 보면, 남북한 간에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관하여는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연되어 있으나,¹⁰⁰⁾ 저작권 분야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북한의 저작물이 보호되고 있고, 남한에서 저작권 관련 판결¹⁰¹⁾이 내려지는 등 북한

인 등 등록가능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을 받고 양수받는 실정이라고 한다). 최성우, 앞의 발표문, 39면; 거절사유를 밝히지 않거나 '선등록상표와 유사라는 통상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북남경제협력법(2005)의 소관사항'이라는 새로운 거절 이유를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찬호, "산업재산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추진 과제", 제2회 남북 지식재산권 포럼(한반도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공유), 2019. 12. 10. 발표자료, 72면.

100) 사실 특허법 분야는 북한과의 기술격차가 커서, 또 상표법 분야는 유명한 상표브로커에 의한 남한 상표 침해의 문제가 주된 단기적 쟁점으로 있을 뿐 상호 대등하게 논의할 여지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 일상성이 강한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남북한 법제 중 그나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 남한 저작물이 세계적으로 K-POP, K-DRAMA 등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또 북한의 저작물 또한 역사성 등에서 상품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술, 문학(출판), 영화 등 다방면에서의 논의가 활성화되어 저작권제도의 교류 및 협력 증진론도 조심스럽게 추진되어 왔다. 향후 앞서 본 디지털 저작물 보호 관련 쟁점(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온라인 저작물 유통 규제 등) 등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한다. 앞서 2006. 3. 14. 경문협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다.

101) 예컨대,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발행함에 필요한 요건과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등의 효력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범위 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6·25 사변 전후에 남북되거나 월북한 문인들이 저작한 작품들을 발행하려면, 아직 그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만큼, 동인들이나 그 상속인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양수 또는 저작물이용 허락을 받거나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반면 북한 저작권법 제5, 7조의 다른 '나라'에는 남한이 포함되지 않되, 남한 저작물에 대하여도 우리의 논리처럼 북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처리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명섭, 앞의 책, 300면.

저작물의 남한에서의 보호가 논의된 사례가 있고, 반대로 남한 저작물의 북한에서의 침해도 논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인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앞서 본 발명법 등 보다는 늦은 2001. 3. 21. 제정된 이후로 2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2. 11. 13. 개정법이 현행법이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2003. 6. 11. 제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으로 별도로 보호하고 있다.¹⁰²⁾

북한 저작권법의 몇가지 특이점¹⁰³⁾만을 살펴보면, 첫째, 저작권의 보호대상¹⁰⁴⁾에서 제6조에서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특이하게 규정하여 체제상 이용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부정하고 있다.¹⁰⁵⁾

102) 남한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2009. 4. 22. 저작권법으로 통합하였다. 북한의 경우 별도의 법이 있음에도 제9조 저작권의 대상에 “8.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넣었는바 이에 대하여는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처럼 관련기관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을 등록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저작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중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강하게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주환, 앞의 발표문, 72면.

103) 북한 저작권법에 사용된 단어나 용어가 비록 한국어를 같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반면, 북한 저작권법에 특이한 용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북한 저작권법 규정 중 남한 저작권법과 유사한 내용도 있다고 하며 북한 저작권법은 남한 저작권법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일부 내용을 수용한 듯하다는 견해(최경수, 앞의 책, 22면)가 있듯이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하에서는 몇가지 대표적인 차이점만 살펴본다.

104) 당연한 것임에도 ‘과학논문’을 명시적으로 보호대상으로 포함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교예’같은 북한의 장점이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건축저작물’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8조(저작권대상선정의 기본요구) “저작권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은 저작권보호의 선결조건이다. 해당 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대상을 정하여야 한다.”를 주목하며 국가의 개입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설명 등은 최경수, 앞의 책, 35면.

105)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출판이나 공연, 방송이나 전시 등은 그 자체가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위 규정의 활용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한다. 최경수, 앞의 책, 40면[나아가 2001년 중국 저작권법도 북한의 것과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은 이 규정의 TRIPS협정 위반을 들어 WTO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하였고, WTO 패널은 2009. 3. 20. 보고서를 채택하여 중국 저작권법 규정은 비록 베른협약 제 17조에 따라 저작물의 유통, 전시는 금지할 수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정하였다(China-Measures Affecting the

둘째, 북한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지는데, 저작인격권(제14조)에는 우리와 같이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밝힐 권리(“성명표시권”) 및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동일성유지권”)가 인정되는데, 특이한 것은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을 존속기간이 없이 보호한다(제20조)는 것이다. 북한 저작권법이 저작인격권을 무기한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산업적 측면보다 저작권 관련 질서유지 측면에 비중을 둔 입법이라고 평가한 견해¹⁰⁶⁾가 있다.

셋째,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예외와 제한에 관한 조항이 하나뿐으로 이른바 ‘저작물의 무허가 이용’이라는 제목으로 모두 9가지의 예외를 규정¹⁰⁷⁾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이 공정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데 북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범위를 오히려 더 넓게 인정하려고 하는 입법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분석한 견해¹⁰⁸⁾도 있다.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port of the Panel, WT/DS362/R, 26 January 2009). 이에 따라 중국은 2010년 저작권법 제4조를 개정하였는데 북한 저작권법 제6조도 같은 이유로 배른협약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106) 남형두, “북한 저작권법 연구 — 조용필의 평양공연은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조』, 통권 제607호(2007), 195, 199면; 이 조항은 프랑스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인격적 권리의 항구성은 그 권리의 상속성을 인정하거나 사후 인격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북한 저작권법은 이 점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서 입법 불비로 생각된다고 한다. 최경수, 앞의 책, 57면.

107) 제32조에서 “1. 개인 또는 가정적 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번역하는 경우, 2.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하는 경우, 3. 학교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하는 경우, 4.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작성에 이용하는 경우, 5.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6.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7.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하는 경우, 8. 공공장소에서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9.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전자로 복제하는 경우”만을 두고 있다.

108) 남형두, 앞의 논문, 201면.

IV. 결 론

디지털 시대에, 과학기술 선진국들에게 둘러싸인 시공간 속의 남북한이 민족 생존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유사점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 체제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 지적소유권법 체제 및 그 뒷배가 되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이해는 이미 단기적 과제임을 환기하였고, 북한의 지적소유권 제도와 우리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그 목적과 내용이 외관상 유사하지만 그 배경이 되는 사상은—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과학기술발전 도구라는 최소한의 인식만 제외하고는—상이한데 무엇보다 그 근간을 이루는 일반재산권 제도가 매우 다르고, 헌법이 실질적 최상위 규범에 해당하는가라는 법체계질서의 측면에서 다름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지적소유권을 북한 체계 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북한의 헌법적 규범에 따른 접근을 시도하였고, 이는 “헌법적 규범과 각 개별법(부문법)”의 연계성을 추구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사실 이러한 시각은 관련제도 연구시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으로, 특히 지적재산권제도라는 ‘나무’는 한 국가의 소유권 제도(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라는 ‘토양’에서 괴릴 수 없고, 과학기술적·경제적 성과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적·국가정책적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헌법적 접근방식에 의한 북한 지적소유권법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것으로, 향후 연구가 진전되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의 최첨단’을 달리는 지식재산권이 북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라는 방향성과 한계성이 다소라도 예측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남북한의 다른 법역과 달리 지식재산권 법역과 과학기술 법역에서는 상호교류나 통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있고,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예전보다는 실질적 법치국가로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북한 지적소유권 제도는 비록 근본적으

로 사회주의 재산권 제도와는 체계정합성이 크지 않아 보여 불안정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과학기술발전 정책과 더불어 남한과 함께 그 발전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 헌법질서의 시각에서 북한 지적소유권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근본적 접근시도는 통일을 바라보는 미래 세대들을 위한 논의의 초석을 다지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준다는 점에서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박종배,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 북코리아, 2011.
윤권순, 『지식재산권법이란 무엇인가』, 화산미디어, 2019.
최은석·허인, 『북한 지식재산제도의 이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개정증보판, 한울 아카데미, 2019.
한수웅, 『헌법학』, 제8판, 법문사, 2018.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14판, 박영사, 2018.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제6판, 박영사, 2013.

〈학술지〉

- 권영태, “교시우위론과 북한법의 규범력”, 『북한법연구』, 제21호(2019).
김홍광,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과정에서의 북한 법제 개편전망”,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2011).
남형두, “북한 저작권법 연구—조용필의 평양공연은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조』, 통권 제607호(2007).
박성호, “지적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법학논총』, 제24집 제1호(2007).
박준석, “출원” 용어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한 개정법 상의 특허출원표시 제도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80호(2017).
송인호·최귀일,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고찰—북한의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2019).
육소영, “지적재산권과 인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2017).
육소영·윤권순,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2003.
윤철홍, “통일 후 북한의 소유제도 재편 방향”, 『숭실대 법학논총』, 제44집(2019).
이규홍, “지식재산권법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70-3호(2019).
이규홍·정필운, “헌법 제22조 제2항 관련 개헌론에 관한 소고—지적재산권조항의 재정립에 관하여”, 『법조』, 통권 제650호(2010).

정병화 외 2인,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인권 실효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2016).

최경수,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홍봉규,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 고찰”, 『통일문제연구』, 2013년 상반기/통권 제59호 (2013).

〈신문기사 및 인터넷 자료〉

북한 중앙통신 등 각종 언론자료, 블로그 등 인터넷자료.

〈기타자료〉

윤상도·장철익, 『북한의 헌법』, 법원행정처(통일사법정책자료), 2010.

이세훈, 「북한식 4차 산업혁명」 ①~④, 『문화저널 21』, 2019. 2. 14.~3. 7.

이주환, “북한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연구—북한에도 특허청이 있을까?”, 연세법학회 제64회 학술대회 발표문(2019.1.26.).

이찬호, “산업재산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추진 과제”, 제2회 남북 지식재산권 포럼(한반도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공유), 2019. 12. 10. 발표자료.

장명봉 편, 『2018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8.

최성우, “남북한 상표권 보호의 현황과 상표제도 공동 발전방안”, 2018. 11. 27. 국회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 토론회 자료집.

최현규, “발명공보로 본 최근 북한 특허활동 현황”, 제2회 남북 지식재산권 포럼(한반도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공유), 2019. 12. 10. 발표자료.

『북한개요』, 통일연구원, 2009.

『북한 민법 주석』, 법무부, 2014.

『북한 민사법 사전』,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북한법령용어사전』, 법제처연구원, 2017.

The Constitutional Issues and Future Tasks related to North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and Science-technology System

Lee kyu-hong

In the digital age, it is natural for '2 Koreas' to be interested in Intellectual Property("IP") for people's survival. So, from the perspective of a global competition system,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K")'s IP system and the science-technology policy is already a short-term task. Although NK's and our IP systems are similar, the basic idea is fundamentally different, except for the minimal recognition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understand NK's IP rights because NK's general property rights system and the systematic status of the Constitution are totally unlike. To this end, first, Constitutional grounds with NK IP rights will be examined. In particular, the NK's Constitution, which does not recognize the privatiz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should be analyzed for what IP mean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cretely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IP rights in the light of the NK's Constitution, not from South Korea's view. It is expected to provide a new view point to future generations looking forward Unification.

Keyword

Intellectual Property, Constitution, science and technology, Unification, ownership, patent law, trademark law, copyright law, North Korea